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직의 면직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 표현의 정비〉
■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6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 표현의 정비	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보훈 등 10명

나. 제출일자 : 2025. 4. 30.

다. 회부연월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 번호 제1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 중 장애인을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 표현의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의 하나인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 ----- ----- -----.
1. <u>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8조제1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사유를 ①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¹⁾.

면직사유의 하나인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 ‘심신장애’ 표현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면직사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심신’은 정신적·신체적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할 수도 있는바,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이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心身)’은 마음과 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심신(心神)’은 마음과 정신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입법례도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

<‘심신’에 관한 입법례>

구분	입법례
심신(心身)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구분	입법례
심신(心神)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출처: 법제처

둘째,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면직이나 해촉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고 있는데, ①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여부와 무관하게 위원회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사람은 위원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②위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명·위촉권자가 위원의 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③심신장애에 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법률행위성 유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

의가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의 표현 중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31